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기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965 발의연월일: 2021. 6. 22.

발 의 자: 강기윤・김희국・구자근

김선교 • 박완수 • 김태호

이종성 · 최형두 · 권명호

윤영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,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에게 폐기, 출하연기 등을 조치하 여 유통을 차단하고 있음

그러나, 생산단계 농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해당 농수산물의 부적합이 폐광산 지역의 중금속 오염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로서 생산자나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아울러 안전성조사 등 업무를 대행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재지정 신청 수수료 부과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, 지정사항 변경승인 신 청에 대한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폐광산 중금속 오염 등 불가 항력적인 부적합 농수산물을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함(안 제63조).
- 나. 안전성검사기관의 유효기간 만료 전 재지정 신청 및 지정사항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수수료 근거를 마련함(안 제113조).

법률 제 호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·도지사가 제1항의 농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기준 위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해당 농수산물을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다.
- 1. 농수산물이 「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 호에 따른 광산피해로 인하여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중금속 잔류 허용 기준이 초과된 경우
- 2.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

제113조제10호 중 "신청하는"을 "신청(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신청하는"으로 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13조제10호 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수수료에 관한 적용례) 제113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이 법에 따라 다시 지정을 신청하거나 변 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
제63조(안전성조사 결과에 따	른 제63조(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	
조치) ① (생 략)	조치) ① (현행과 같음)	
<u><신 설></u>	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	
	・도지사가 제1항의 농수산물	
	생산단계 안전기준 위반이 다	
	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	하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	
	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	
	<u>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</u>	
	구청장이 해당 농수산물을 수	
	매하여 폐기할 수 있다.	
	1. 농수산물이 「광산피해의	
	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」	
	제2조제1호에 따른 광산피해	
	로 인하여 「식품위생법」에	
	따른 중금속 잔류허용 기준	
	이 초과된 경우	
	2.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	
	<u>경우</u>	
② (생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	
제113조(수수료) 다음 각 호	의 제113조(수수료)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	<u>Z</u>	
리령, 농림축산식품부령 또	=	
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	পা	

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 다만,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, 농림축산식 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 면할 수 있다.

- 1. ~ 9. (생략)
- 10. 제64조제2항에 따라 안전 성검사기관의 지정을 <u>신청하</u> 는 자

11. ~ 18. (생략)

•	
	 _
	•

- 1. ~ 9. (현행과 같음)
- 10. -----

11. ~ 18. (현행과 같음)